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(이하 ‘교부금법’이라 함) 제5조의3(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) 개정(신설, 2023.12.31.)에 따라 마련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,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·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시기·절차 등에 대한 규정 신설
(안 제3조의4)

나. 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3조의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4(특별교부금 교부 특례 교부시기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운영 기준에 준하여 운용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의 평가에 준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.

③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2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4(특별교부금 교부 특례 교부시기 등)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운영 기준에 준하여 운용한다.</u> <u>②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의 평가에 준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.</u> <u>③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 시기는 제2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644